2017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 목 차 ◀◀◀

1 수출정보 제공 및 컨설팅
1. 농수산식품수출정보(KATI) ····· 1
2. 수출확대지원 컨설팅 ····· 2
3. 현지화 지원 ····· 3

2 수출품목육성・발굴
4. 선도조직 기반조성 ····· 4
5. 수출상품화 지원 ····· 5
6. 글로벌 브랜드 육성지원 ····· 6
7. 농식품 스타콜라보 마케팅 ····· 7

3 안전성 및 품질관리 지원
8. 수출전문단지 조직화 교육 ····· 8
9. 안전성관리 ····· 9
10. 선도유지제 지원 ····· 10

4 통관 및 물류지원
11. 수출물류비 지원 ····· 11
12. 항공공동물류활성화 ····· 12
13. 해외공동물류센터 ····· 13
14. 중국 콜드체인구축 ····· 14
15. FTA특혜관세 활용지원 ····· 15
16.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 16
17. 수출보험지원 ····· 17
18. 해외인증 등록지원 ····· 20

5 현지 유통망 개척
19.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 23
20. 바이어 거래알선 ····· 27
21. 해외 안테나숍(Antenna Shop) 설치지원 ····· 29
22. 한국식품 체험·홍보(K-Food Fair) ····· 30
23. 해외판촉행사 지원 ····· 31

<참고> aT 지역본부, 해외지사 연락처 ····· 32

1 수출정보 제공 및 컨설팅

1. 농수산식품수출정보(KATI)

<table>
<tr><td>개 요</td><td>○ 국내 유일의 농림수산식품 수출정보 전문 서비스로 수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농어민, 수출지원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등 모든 농수산물 수출정보 수요자</td></tr>
<tr><td>지원분야</td><td>○ 해외 시장동향, 무역통계, 수출입제도 등 농식품 수출 관련 각종 수출정보</td></tr>
<tr><td>지원내용</td><td>○ 기본이용 카테고리
<table>
<tr><th>구 분</th><th>서 비 스 내 용</th></tr>
<tr><td>시장정보</td><td>국내외 뉴스 및 국내외 동향분석 등</td></tr>
<tr><td>품목정보</td><td>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정보 등</td></tr>
<tr><td>수출안전정보</td><td>국가별 통관검역, 농약/첨가물, 수출검역제도, 식품안전관련법률</td></tr>
<tr><td>수출지원정보</td><td>해외시장맞춤조사, 수출정보SOS, 지원사업소개, 지원조직</td></tr>
<tr><td>수출입통계</td><td>수출입 통계, 해외 도·소매가격</td></tr>
<tr><td>비관세장벽</td><td>비관세장벽 현황, 통관문제사례, 통관요건 월드맵, 현지화자문</td></tr>
<tr><td>자료실</td><td>발간책자, 국가별수출입절차, 인포그래픽스</td></tr>
</table>
○ 해외시장맞춤조사 : 개별 특화요구 정보를 일대일 맞춤형 정보제공</td></tr>
<tr><td>이용방법</td><td>○ 기본이용 : KATI 홈페이지 접속(www.kati.net) → 회원가입 → 정보이용
○ 해외시장맞춤조사 : KATI(www.kati.net) 접속 → 메인 상단에 해외시장 맞춤조사 클릭 → 희망정보 요청 → 정보조사 후 게재</td></tr>
<tr><td>추진현황 및 계획</td><td>○ 수출관련정보 통합을 통한 One-stop 정보제공
○ 수출안전정보 DB구축 및 제공
○ 수출현안·이슈분석 정보 제공 : 지구촌리포트</td></tr>
<tr><td>담당부서</td><td>○ 지구촌리포트
- aT 수출정보부 이광성 과장(061-931-0872)
○ KATI 회원가입 및 이용
- aT 수출정보부 조민지 사원(061-931-0879)
○ 해외시장맞춤조사
- aT 수출애로상담실(02-6300-1119)</td></tr>
</table>

2. 수출확대지원 컨설팅

<table>
<tr><td>개 요</td><td colspan="3">○ 국내 농식품업체 대상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내수 기업은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수출업체는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확대 도모</td></tr>
<tr><td>지원대상</td><td colspan="3">○ 중소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 (대기업 제외)
○ AG·HS코드로 분류되는 농축산물 대상</td></tr>
<tr><td rowspan="3">지원분야
및
지원내용</td><td>구 분</td><td>지원분야</td><td>지원내용</td></tr>
<tr><td>심층컨설팅</td><td>▸ 컨설턴트 그룹-개별기업간 장기간 컨설팅 수행
① 수출첫걸음(초보기업) : 무역실무 능력배양, 통관·검역, 제품개발, 상품화, 인허가 취득 등 수출 필요조건 충족 등 국내 수출인프라 구축, 마켓테스트
② 신시장개척(기수출업체) : 신규 해외 바이어발굴, 거래알선·체결, 유통망입점, 샘플수출, 해외 통관·검역 등 시장개척</td><td>[장기 6개월 이내]
① 수출첫걸음 분야 :
컨설팅 비용의 90% 정부지원
(업체별 최대 40백만원 한도)
② 신시장개척 분야 :
컨설팅 비용의 90% 정부지원
(업체별 최대 40백만원 한도)</td></tr>
<tr><td>현장코칭</td><td>▸ 개별 전문위원-개별기업간 단기간 컨설팅 수행
① 수출실무: 금융/보험, 라벨링/포장, 통관검역, 물류효율화, 해외마케팅, 생산·품질관리, 신상품개발/상품화, 법률상담 등
② 수출FTA활용 : 원산지 판정/증명, 원산지 인증수출자 등록, 원산지 사후검증 지원, 원산지관리시스템 설치보급</td><td>[단기 5일 방문 코칭]
o 방문컨설팅 비용정액 지원 : 140만원
o 업체 자부담금 : 10만원
*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무료</td></tr>
<tr><td>추진절차</td><td colspan="3">○ 심층컨설팅
공고 ▶ 접수 ▶ 무료 기업 현장방문 진단 ▶ 컨설팅사 매칭 ▶ 수행계획서 작성 ▶ 수행계획서 심의 ▶ 자부담금 납입 ▶ 협약체결 ▶ 컨설팅 착수 ▶ 중간점검 ▶ 컨설팅 완료 ▶ 완료점검 및 만족도 조사 ▶ 사후관리
○ 현장코칭
공고 ▶ 지원업체 신청 ▶ 상담 ▶ 업체 선정 ▶ 전문위원 매칭 ▶ 자부담금 입금 ▶ 컨설팅 수행 ▶ 만족도조사 및 완료점검</td></tr>
<tr><td>신청방법</td><td colspan="3">○ http://global.at.or.kr 또는 http://www.foodbiz.or.kr</td></tr>
<tr><td>담당부서</td><td colspan="3">○ aT 기업컨설팅부 조창식 과장(02-6300-1645)
○ aT 기업컨설팅부 권홍주 사원(02-6300-1647)</td></tr>
</table>

3. 현지화 지원

<table>
<tr><td>개 요</td><td>○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통관애로 해소 및 시장확대를 위한 국가별 비관세장벽 대응 및 상품 분석·홍보</td></tr>
<tr><td>지원대상</td><td>○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td></tr>
<tr><td>지원분야
및
지원내용</td><td>○ 대상지역 : 한국 농식품 수출 주요 수출거점 18개국
– (동아시아) 중국(홍콩 포함), 대만, 일본
– (동남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 등
– (기타) 미주(미국, 캐나다, 브라질), EU(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중동(UAE)
○ 지원내용
<table>
<tr><th>구 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비관세
장벽해소</td><td>• 현지법률· 제도(계약, 관세, SPS 등) 관련 애로 해소
<table>
<tr><th>지원분야</th><th>지원(자문) 내용</th></tr>
<tr><td>법률일반</td><td>– 계약서 작성 자문, 현지법인 설립, 현지 근로허가 등</td></tr>
<tr><td>통관</td><td>– 수입가능 여부 조회, 관세 이외 부가세금 조회 등</td></tr>
<tr><td>SPS</td><td>– 식품 관련법령, 위생기준 조회, 시험검사, 인증기관 등</td></tr>
<tr><td>기타</td><td>– 기타 현지 비즈니스(통역 및 차량대여 알선 등) 지원 정보</td></tr>
</table></td></tr>
<tr><td>라벨링 지원</td><td>• 수출상품 현지어 라벨링(포장) 등록 및 제작 지원
(* 라벨링 작업 중 필요한 사전샘플 검사·검역비 지원 포함)</td></tr>
<tr><td>상표권 지원</td><td>•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출원비 지원</td></tr>
<tr><td>포장패키지
현지화</td><td>• 현지감각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선 및 패키지 개발 지원</td></tr>
<tr><td>바이어
특화지원</td><td>• 바이어 경영진단, 코칭 및 컨설팅
(시장 및 소비자 분석, 마케팅, 현지 물류 및 유통개선, 자금, 클레임 등)</td></tr>
<tr><td>상품 및
시장분석</td><td>• 지사별 신규 유망상품 발굴, 현지시장 진출여건 분석, 마켓테스트 및 홍보 등</td></tr>
</table>
* 현지여건에 따라 서비스 내용 중 일부는 지역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장기간의 연구 분석이나 심층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포장패키지 및 바이어 특화지원 사업은 수출업체가 아닌 해외 바이어만을 대상으로 함</td></tr>
<tr><td>이용방법</td><td>○ 지원기간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에서 전산 신청
○ 신청서류 : 현지화사업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등
○ 모집공고 : www.at.or.kr, www.kati.net, global.at.or.kr 홈페이지 게시</td></tr>
<tr><td>담당부서</td><td>○ aT 통상지원부 오세원 차장(061-931-0861),
정지희 사원(061-931-0863)</td></tr>
</table>

4. 선도조직 기반조성

개 요	○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수출물량공급을 위해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관하는 품목별 선도조직 육성 지원
지원대상	○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등 수출선도조직 선정업체
신청요건	○ 생산자 단체(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수출전문 마케팅 법인 ○ 수출전문단지, 생산자 단체와의 출하약정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의 연합조직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 ('16년 지정품목 : 파프리카, 겨울딸기, 토마토, 양배추, 배, 사과, 감귤, 키위,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절화류, 백합) ○ 지원내용 – 기반조성인센티브 지원 : 국가전체 수출 점유율 및 운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5천만원~3억원 지원(총사업비 80% 이내) – 수출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3~5% 지원 – 생산출자 인센티브 지원 : 생산자 출자 비율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3~5% 지원
진행절차	운영계획 수립 (연초) ▶ 모집공고 ▶ 사업자 선정 ▶ 사업추진 ▶ 정산 및 평가
신청방법	○ 모집공고 확인(www.at.or.kr>알림마당>공지사항) → 신청서작성·제출(본사) → 신청업체 평가(서면, 현장실사 등) → 지원업체 선정 → 약정체결(관할지사) → 사업추진
문의처	○ aT 농산수출부 이순영 차장(061-931-0822) 김준성 사원(061-931-0829)

5. 수출상품화 지원

<table>
<tr><td>개 요</td><td>○ 수출유망 고부가상품 발굴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증대에 기여</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식품 수출업체 또는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제조업체</td></tr>
<tr><td>지원내용</td><td>○ 지원분야 : 유망상품개발 및 해외마케팅 등 제품 현지정착 관련 비용
○ 지원내용
<table>
<tr><th>구분</th><th>지원내역</th><th>비고</th></tr>
<tr><td>1단계</td><td>• 상품개발·개선 및 마켓테스트비용
– 지원비율 : 80%, 지원한도 : 40백만원</td><td></td></tr>
<tr><td>2단계</td><td>• 해외시장진입상품의 해외마케팅비용
– 지원비율 : 80%, 지원한도 : 40백만원</td><td>※ 수출목표액 : 6만불 또는 전년실적×110%</td></tr>
</table>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제외</td></tr>
<tr><td>선정기준</td><td>○ 서류전형 → 계량평가(1.5배수) → 해외aT추천 및 공개발표평가 → 최종선정
○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검토
○ 계량평가(100점) : 계량항목 평가를 통해 공개발표평가 대상업체 선정
○ 공개발표평가(100점)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PT발표평가</td></tr>
<tr><td>진행절차</td><td>모집공고 (1월) ▶ 업체선정 (1월) ▶ 사업 약정체결 (2월) ▶ 사업추진 및 점검(연중) ▶ 정산 및 평가 (12월)</td></tr>
<tr><td>모집시기</td><td>○ 1.11일까지</td></tr>
<tr><td>신청방법</td><td>○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지원사업신청 → 해외시장개척사업 → 수출상품화지원사업 지원신청</td></tr>
<tr><td>문의처</td><td>○ 홈페이지 주소 : http://global.at.or.kr
○ 식품수출부 김예진 대리(061-931-0845)</td></tr>
</table>

6. 글로벌 브랜드 육성지원

<table>
<tr><td>개 요</td><td>○ 농가소득과 연계성을 높이고 개별기업 뿐만 아니라 집단·공동브랜드까지 개념을 확장하여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집중 육성</td></tr>
<tr><td>지원대상</td><td>○ 신선농산물 또는 국가인증* 농식품 브랜드
* 전통식품품질인증, 6차산업화 인증, 지리적표시(GI) 인증 등</td></tr>
<tr><td>지원내용</td><td>○ 지원내용
<table>
<tr><th>구 분</th><th>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th></tr>
<tr><td>지원대상</td><td>○ 신선농산물 또는 국가인증 농식품 브랜드
* (국가인증)전통식품품질인증, 6차산업화 인증, 지리적표시(GI) 인증 등</td></tr>
<tr><td>지원내용</td><td>○ 목표국가 진출을 위한 브랜드 등록·컨설팅·마케팅 비용</td></tr>
<tr><td>사업비
지원한도</td><td>○ 총 사업비의 80%이내 (최대 200백만원)
* 단, 지원한도의 50% 범위내에서 추가 배정 가능(잔여예산 발생시 등)
○ 지원비율 : 1~3년차(80%), 4~5년차(50%)</td></tr>
<tr><td>선정방법</td><td>○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내외부 선정평가 위원회 구성을 통해 계량, 비계량 평가</td></tr>
<tr><td>사업량</td><td>○ 6개 브랜드 내외</td></tr>
</table></td></tr>
<tr><td>선정기준</td><td>○ 선정방법 : 서류전형 → 계량평가 → 면접심사(선정위원회)
– 평가대상 : 업체별 목표 국 대상 브랜드육성 사업 계획서
–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
– 평가구성 : 계량 30점, 비계량 70점(면접심사)
– 최종선정 : 최종 득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필요시 추가선정 가능)
* 비계량평가 시 선정위원회 구성(내·외부 전문가 4인 이상)을 통해 객관성 제고</td></tr>
<tr><td>진행절차</td><td>모집공고 (1월) ▶ 업체선정 (2월) ▶ 사업 약정체결 (3월) ▶ 사업추진 및 중간점검 (연중) ▶ 정산 및 종합평가 (12월)</td></tr>
<tr><td>신청방법</td><td>○ 모집시기 : 매년 1-2월 중
○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td></tr>
<tr><td>문의처</td><td>○ aT 식품수출부 정현철 차장(061-931-0841)
유은정 대리(061-931-0846)</td></tr>
</table>

7. 농식품 스타콜라보 마케팅

<table>
<tr><td>개 요</td><td>○ 정부인증 농식품 등 우리 우수 농식품 수출업체와 한류스타와 매칭(스타플랫폼 매개)을 통한 제품 개발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td></tr>
<tr><td>지원대상</td><td>○ 농가소득과 연계강화를 위한 신선농산물 또는 전통식품품질인증획득 가공식품 수출업체, aT 미래클 품목 수출업체</td></tr>
<tr><td>지원내용</td><td>○ 지원내용
<table>
<tr><th>구 분</th><th>농식품 스타 콜라보 마케팅</th></tr>
<tr><td>지원대상</td><td>○ 농가소득과 연계강화를 위한 신선농산물 또는 전통식품품질인증획득 가공식품 수출업체, aT 미래클 품목 수출업체</td></tr>
<tr><td>지원내용</td><td>○ 한류스타와 매칭을 위한 플랫폼 사용비(입회비 등), 초기 한류스타와 연계한 제품개발 및 컨텐츠 제작비용, 상품 온/오프라인 해외 판촉홍보 등</td></tr>
<tr><td>사업비 지원한도</td><td>○ 총 사업비의 80%이내 (업체별 100백만원 한도)</td></tr>
<tr><td>선정방법</td><td>○ (플랫폼 선정)연예기획사 등 업계에서 참여의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서 접수 및 내외부 평가위원회 구성
○ (지원업체선정) 희망 수출업체(수출상품) 모집 및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선정</td></tr>
<tr><td>사업량</td><td>○ 6업체 내외</td></tr>
</table></td></tr>
<tr><td>선정기준</td><td>○ 선정방법(계획안) : 서류전형 → 계량평가 → 면접심사(선정위원회)
– 평가대상 : 업체별 사업 계획서
–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
– 평가구성 : 계량 30점, 비계량 70점(면접심사)
– 최종선정 : 최종 득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필요시 추가선정 가능)
* 비계량평가 시 선정위원회 구성(내·외부 전문가 4인 이상)을 통해 객관성 제고</td></tr>
<tr><td>진행절차</td><td>모집공고 (2월) ▶ 업체선정 (3월) ▶ 사업 약정체결 (4월) ▶ 사업추진 및 중간점검 (연중) ▶ 정산 및 종합평가 (12월)</td></tr>
<tr><td>신청방법</td><td>○ 모집시기 : 매년 1–2월 중
○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td></tr>
<tr><td>문의처</td><td>○ aT 식품수출부 정현철 차장(061–931–0841)
신정현 사원(061–931–0849)</td></tr>
</table>

3 안전성 및 품질관리 지원

8. 수출전문단지 조직화 교육

<table>
<tr><td>개 요</td><td>○ 안전한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출집약형 전문단지를 육성하여 생산기반 경쟁력 강화</td></tr>
<tr><td>지원대상</td><td>○ 지원대상 : 정부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td></tr>
<tr><td>지원품목</td><td>○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가목의 농산물(단, 임산물 제외)</td></tr>
<tr><td>신청요건</td><td>○ 동일품목 및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 단지 연합신청 및 수출업체 참여형태 우선지원 및 사업추진 최소단위는 농산물전문생산단지 1개소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지침상, 안전성전담관리인력 고용여부 신청 필수요건(참여단지별)</td></tr>
<tr><td>지원내용</td><td>○ 농가인식개선, 시스템구축, 인력양성 등 3대 부문의 소요예산의 90%지원 (지원한도 : 12백만원)
<table>
<tr><th>부문</th><th>세부지원내역</th></tr>
<tr><td>농가인식 개선</td><td>– 소속농가안전성교육, 생산기술품질관리교육, 수출국가별 검역(방제)교육을 위한 회의관련비용 및 농약사용매뉴얼·책자·품질품위 기준 포스터 제작
– 컨설팅비, 회의실 임차, 책자 및 인쇄물 제작 등 인쇄비</td></tr>
<tr><td>안전성시스템 구축</td><td>– 농약·병해충 기록 전산시스템구축, ERP시스템 구축, 농약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등 IT관련 시스템 개발 및 농약 보관박스 제작 등</td></tr>
<tr><td>전문인력 양성</td><td>– 안전성 전담관리인력 워크샵(식비포함)·선진농업사례 현장조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자격 취득 비용, 전문서적 구입비용</td></tr>
</table></td></tr>
<tr><td>담당부서</td><td>○ aT 농산수출부 이세호 과장(061-931-0825)
한유진 사원(061-931-0824)</td></tr>
</table>

9. 안전성조사

개 요	○ 수출국의 까다로운 안전성 제도는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출 농식품의 국내 생산단계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잔류농약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수출환경 조성
지원내용	1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 지원품목 : 농식품 전반(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자 및 수출농가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 2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 지원품목 : 농식품 전반(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식품위생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 3 대일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 지원품목 : 가공식품 전반 – 지원내용 : 對 일본 수출 시 수입식품 의무검사주기 완화 및 수입시 수입식품반출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대일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 서비스 지원
추진절차 및 이용방법	○ 지원시기 : 매월 신청, 지원 ○ 참가신청 : http://atess.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 ○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운영계획 수립 (본사) ▶ 모집공고 (본사, 연중) ▶ 검사비 신청 및 서류제출 (신청업체) ▶ 신청서류 검토 (지역본부) ▶ 검사비 지원 (지역본부) ○ 대일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운영계획 수립 (본사) ▶ 모집공고 (본사, 연중) ▶ 신청서류 제출 (수출업체→ 본사) ▶ 서류 검토 및 일본후생노동성 등록 (aT→한일대사관→ 일본후생노동성)
담당부서	○ aT 농산수출부 이세호 과장(061-931-0825) 김준성 사원(061-931-0829) ○ aT 각 관할지역본부

10. 선도유지제 지원

<table>
<tr><td>개 요</td><td>○ 수출 신선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선도유지제 구입지원사업</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산물 생산자 조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제외</td></tr>
<tr><td>지원내용</td><td>○ 지원내용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부가세 제외)의 90%

○ 지원 한도 : 업체당 연간 30백만원
* 수출조직(농가)은 수출신고필증 상의 화주 및 제조자에 한함
* 수출농산물 생산자조직 지원신청은 개별 업체 신청분과 중복지원 불가
* 선도조직 연합법인에 대해서는 연합법인 참여업체별 지원한도 인정

○ 지원 기준
<table><tr><th>선도유지제명</th><th>지원부류(품목)</th></tr><tr><td>전처리제</td><td>화훼류</td></tr><tr><td>이산화탄소 흡수제</td><td>김치류</td></tr><tr><td>이산화탄소 처리제</td><td>딸기, 버섯</td></tr><tr><td>훈증살균제</td><td>사과, 배, 파프리카, 토마토, 키위</td></tr><tr><td>선도유지팩/패드</td><td>과실류, 채소류</td></tr></table>* 제품별 세부지원한도는 atess.at.or.kr 참조</td></tr>
<tr><td>신청방법</td><td>○ 신청 방법 : atess.at.or.kr 온라인을 통한 전산신청 후 aT 관할지역본부에 선도유지제 구입 및 사용 증빙 송부(연중)

○ 제출 서류 : 선도유지제 지원신청서 및 세부사용내역서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제출 필수
* 수출신고필증, 선도유지제 구입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등</td></tr>
<tr><td>담당부서</td><td>○ aT 농산수출부 김준성 사원(061-931-0829)</td></tr>
</table>

4 통관 및 물류지원

11. 수출물류비 지원

<table>
<tr><td>개 요</td><td colspan="2">○ 포장·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td></tr>
<tr><td>지원대상</td><td colspan="2">○ 중앙정부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이 10만$ 이상인 업체
– 단, 일본채소류ID 대상품목은 ID보유 시에 한하여 지원
(일본 채소류ID 대상품목 : 방울토마토,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깻잎, 참외)
○ 지자체 : 지자체 관내에서 생산(제조)된 농식품을 수출한 업체
– 지자체별 지원기준 상이</td></tr>
<tr><td>지원품목</td><td colspan="2">○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및 신선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 지원부류 :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쌀가공품, 차류, 미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2개 부류
* 단,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감안 필요시 자체지원 품목 별도운용 가능</td></tr>
<tr><td rowspan="3">지원내용</td><td>지원한도</td><td>• 표준물류비의 35%를 한도로 매월 수출물량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10% 내외/수출업체 지자체(25% 내외/수출업체+농가분) 분담하여 지원</td></tr>
<tr><td>내 용</td><td>• `17.1.1~12.31 수출물량에 대해 지원(B/L상의 수출선적일 기준)
• 중앙정부 매월 /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원</td></tr>
<tr><td>지원액</td><td>• 수출물량 × 품목별·국가별 지원단가(표준물류비의 35% 이내)</td></tr>
<tr><td>추진절차</td><td colspan="2">지원업체 사전등록 ▶ 신청접수 (매월 초) ▶ 지원신청서 검토 ▶ 지원금액 계산 및 지급(매월 말)</td></tr>
<tr><td>추진현황 및 계획</td><td colspan="2">○ `17.1.1~12.31 수출 선적 분에 한하여 지원</td></tr>
<tr><td>이용방법</td><td colspan="2">○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 접속 → 업체 기본정보 입력 → 수출실적 입력 → 지원신청서(전산출력) 및 수출증빙자료 제출(관할aT지역본부)</td></tr>
<tr><td>담당부서</td><td colspan="2">○ aT 농산수출부
– 담당자 : 박일상 차장(061-931-0821), 박수경 과장(061-931-0823)
– 일본채소류 ID관련 : 이세호 과장(061-931-0825)

○ aT 지역본부별 담당자
<table>
<tr><th>시도</th><th>지사</th><th>담당자</th><th>연락처</th><th>시도</th><th>지사</th><th>담당자</th><th>연락처</th></tr>
<tr><td>경기</td><td>서울경기지역본부</td><td>강인구</td><td>031)8060-6051</td><td>전남</td><td>광주전남지역본부</td><td>김 석</td><td>062)940-7017</td></tr>
<tr><td>인천</td><td>인천지역본부</td><td>장재완</td><td>032)272-3012</td><td>경북</td><td>대구경북지역본부</td><td>남기학</td><td>053)218-4907</td></tr>
<tr><td>강원</td><td>강원지역본부</td><td>곽중문</td><td>033)920-1545</td><td>부산</td><td>부산울산지역본부</td><td>장지희</td><td>051)947-1086</td></tr>
<tr><td>충북</td><td>충북지역본부</td><td>김유리</td><td>043)902-9529</td><td>경남</td><td>경남지역본부</td><td>김주식</td><td>055)274-4813</td></tr>
<tr><td>충남</td><td>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td><td>양희민</td><td>042)389-5013</td><td>제주</td><td>제주지역본부</td><td>강주미</td><td>064)746-9479</td></tr>
<tr><td>전북</td><td>전북지역본부</td><td>장현미</td><td>063)904-5873</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able>

12. 항공공동물류활성화

개 요	○ 공동물류를 담당할 물류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물량 확보에 따른 수출 운송비 절감 유도 및 물류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화주)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공동 운영 노선 이용 시 운송물량 규모화에 따른 할인된 운임 제공 – 공동물류 참여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 – (항공) 유류할증료의 50%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수산·임산물 및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물량은 인센티브 지원 제외
진행절차	○ 수출업체 모집 및 신청(수시) ▶ 이용실적 보고 및 인센티브 신청(매월) ▶ 인센티브 지원(매월)
신청방법	○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온라인 신청 → 공동물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 지원신청서 작성
문의처	○ aT 농산수출부 박일상 차장(061-931-0821)

13. 해외공동물류센터

<table>
<tr><td>개 요</td><td>○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통한 냉장·냉동 물류서비스를 지원하여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신규시장 개척 지원</td></tr>
<tr><td>지원대상</td><td>○ 한국 농식품 바이어 및 수출업체(현지법인)</td></tr>
<tr><td>지원내용</td><td>○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료(보관료, 입출고료)의 80% 이내
= 업체별 지원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상이(5백만원~5천만원)
<table>
<tr><th>구분</th><th>지원대상</th><th>지원내용</th></tr>
<tr><td rowspan="2">해외공동물류센터</td><td>냉동·냉장창고</td><td>이용료의 80%</td></tr>
<tr><td>상온창고
(칭다오물류센터)</td><td>이용료의 50%</td></tr>
<tr><td>도쿄소포장센터</td><td>소포장센터</td><td>임차료의 60~80%</td></tr>
</table></td></tr>
<tr><td>추진절차</td><td>추진계획 수립 ▶ 모집 및 선정(상·하반기) ▶ 사업집행 및 정산(매월)
(1~11월)</td></tr>
<tr><td>이용방법</td><td>aT해외지사
관리감독 ↓ ⑤ 비용정산
수출업체 ② 선적 → 위탁 물류업체(창고) ④ 운송 → 유통업체
↓ ④ 물품인도
① 오더 및 계약체결
③ 대금결제 ↖ 바이어</td></tr>
<tr><td>추진현황
및 계획</td><td>○ 현 황 : 13개국 47개소('16년)
○ 계 획 : 14개국 49개소('17년)</td></tr>
<tr><td>담당부서</td><td>○ aT 중국수출부 고정희 차장(061-931-0891)</td></tr>
</table>

14. 중국 콜드체인 구축사업

<table>
<tr><td>개 요</td><td>○ 농식품 냉장·냉동 물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중국 내륙지역 콜드체인 구축 지원을 통해 한국 냉동·냉장식품 내륙시장 개척 강화</td></tr>
<tr><td>지원대상</td><td>○ 중국의 한국 농식품 바이어 및 수출업체(현지법인)</td></tr>
<tr><td>지원내용</td><td>○ 지원내용
– 중국 내륙지역 냉동·냉장 운송비 80% 지원
– 주요 물류거점(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등) 공동물류센터에서 거점지역 내 근거리 배송 지원
– 냉장식품 및 신속운송이 필요한 소량 냉동식품 항공운송료 80% 지원

○ 지원한도 : 정기노선 및 비정기노선 업체별 10~50백만원
– ‘17년 이용업체 모집 및 기존업체 평가를 통해 업체당 한도 설정
<table>
<tr><th>구분</th><th>출발지역</th><th>도착지역</th><th>지원내용</th></tr>
<tr><td>정기선</td><td>칭다오
물류센터</td><td>•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 공동물류센터 또는 업체 운송 희망지역</td><td rowspan="2">냉동·냉장 운송료의 80%</td></tr>
<tr><td>정기선
(거점지역내 배송)</td><td>거점지역
공동물류센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td><td>• 거점지역 소비처
- 유통매장, 경소상 창고 등</td></tr>
<tr><td>비정기선</td><td>칭다오 물류센터</td><td>• 중국 내륙지역
- 중국 공동물류센터 또는 업체 운송 희망지역</td><td rowspan="2">냉동·냉장 운송료의 80%</td></tr>
<tr><td>비정기선
(항공운송)</td><td>칭다오
물류센터</td><td>• 중국 내륙지역
- 업체 항공운송 희망지역</td></tr>
</table></td></tr>
<tr><td>선정기준</td><td>○ ‘17년 이용업체 모집 및 평가를 통해 업체당 지원한도 설정
<table>
<tr><th>지원내용</th><th>지원방법</th><th>이용업체 선정</th></tr>
<tr><td>중국 내륙지역
냉동·냉장
운송비(80%)</td><td>운영실적에 의한
실비정산
(물류업체에서 매월 청구)</td><td>- 이용업체는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가 모집 및 선정하고, 업체평가를 통해 지원한도 설정</td></tr>
</table></td></tr>
<tr><td>진행절차</td><td>모집공고 (1월) ▶ 업체평가, 선정 (1월) ▶ 사업 약정체결 (4월) ▶ 사업추진 및 중간점검 (연중) ▶ 정산 및 종합평가 (12월)</td></tr>
<tr><td>신청방법</td><td>○ 모집시기 : `17.1월 초~1월 말
○ 참가신청 :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td></tr>
<tr><td>문의처</td><td>○ aT 중국수출부 고정희 차장(061-931-0891)</td></tr>
</table>

15. FTA특혜관세 활용지원

개 요	○ FTA특혜관세 활용을 통한 수출업체 가격경쟁력 확보 및 수출확대 기회 활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애로사항 컨설팅 및 교육
지원대상	○ 수출 농산물 생산자단체/조직,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생산자조직·단체] - 생산 및 공급 입증서류 작성·관리 프로세스 구축 - FTA 관련 기본 교육 및 유통단계별 원산지 관리 전략 수립 -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을 위한 관련서류 작성 및 생산자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적용 [수출업체] – FTA 관련 기본 교육 및 거래 현황 분석 – 거래 단계별 생산 및 공급 입증서류 확인방법(가이드라인) 교육 –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서류 작성방법 및 시스템 활용방법 교육 – 원산지 증명서 · 확인서 실제 발급 대행 ※ 1:1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수출업체의 FTA 활용 및 통관 무역실무능력 제고
추진절차	1~2월: 품목별 FTA 활용실익 분석 및 업체모집 ▶ 3월: 지원대상 선정 (생산자조직, 수출업체) ▶ 4~10월: 사업시행 ▶ 11월: 최종점검 및 결과보고 ▶ 12월: 정산 및 평가
이용방법	○ aT 홈페이지에서 전산 신청(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신청) ○ 모집공고 : www.at.or.kr, global.at.or.kr 웹사이트에 게시
추진현황 및 계획	○ 신청 기간 : 2017. 2월(예정) ○ 사업 시행 : 2017. 4~10월
담당부서	○ aT 통상지원부 오세원 차장(061-931-0861) 정지희 사원(061-931-0863)

16.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개 요	○ 샘플제공 및 시험수출에 소요되는 통관운송비 지원을 통해 해외 신규바이어 발굴 및 잠재적 수출시장개척 도모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품목 및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 지원 품목 : 수출 농식품 전반(임산물, 수산물 및 연초류 제외) ○ 사업기간 : 2017.1.1.~2017.11.30. * 단, 2016.12월 실적은 소급지원 ○ 지원 내용 :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발송 운송·통관비의 90% - EMS, DHL 등 국제특송 샘플송부시 : 총 특송비의 90%지원 - 시험수출 형태(정식통관)의 샘플송부시 · 내륙운송료, 해상(항공)운임, 국·내외 통관비, 해외내륙운송비의 90% 지원 - 국별 샘플송부 여건을 고려하여 '핸드캐리'로 발송한 통관운송비도 지원 단, 수출면장을 발급받고, 핸디캐리 운송비 영수증(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 한도 : 업체당 연간 10백만원 ○ 지원 조건 : 정상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수출한 경우에 한함 *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 92 / 결제방법 GN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회당 샘플 발송물량은 10BOX & 50kg 한도 내에서 지원 * 동일 바이어 대상 샘플발송 최대 4회 인정
추진절차	수출지원시스템 지원 신청 ▶ 관련 증빙검토 후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월1회) ▶ 본사는 지사별 결과 취합후 정산지급
추진현황 및 계획	○ 샘플통관운송비지원사업 공고(1월) ○ 매월1회 사업비 정산 지급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신선농산물 : 20백만원(20업체) - 가공식품 : 80백만원(60업체)
이용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지원 신청 → 관련 증빙서류(통관·운송비 영수증, 마켓테스트 결과) 관할지사에 제출
담당부서	○ aT 신시장개척부 - 담당자 : 유정림 차장(02-6300-1546)

17. 수출보험지원

<table>
<tr><td>개 요</td><td>○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지원</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td></tr>
<tr><td>지원내용</td><td>
<table>
<tr><th>지원항목</th><th>환변동보험</th><th>단기수출보험</th></tr>
<tr><td>지원대상</td><td>일반형, 범위선물환,
옵션형(부분보장/완전보장) 가입비</td><td>선적후 및 농수산물패키지,
중소기업플러스 단체보험 가입비</td></tr>
<tr><td>지원비율</td><td>가입보험료의 95%</td><td>가입보험료의 90%
* 단, 단체보험은 100%</td></tr>
<tr><td>지원한도</td><td>30백만원 한도</td><td>30백만원 한도</td></tr>
</table>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상품특성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가능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는 예산부족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td></tr>
<tr><td>진행절차</td><td>○ 운영방식 : 한국무역보험공사 위탁
○ 수출업체는 보험공사에 직접 계약 체결하며, 보험가입 시 자부담분(가입보험료의 5~10%)에 한하여 가입비 납부
– 단, 단체보험의 경우 aT에서 보험공사에 직접 계약 체결하며, 업체 자부담 없음
– 단체보험 가입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td></tr>
<tr><td>문의처</td><td>○ aT 농산수출부
– 담당자 : 한고은 사원(061-931-0828)
○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 연락처
<table>
<tr><th>영업점</th><th>연락처</th><th>영업점</th><th>연락처</th><th>영업점</th><th>연락처</th></tr>
<tr><td rowspan="2">중앙지사
(본사)</td><td>02-399-6925</td><td>강남지사</td><td>02-551-0474</td><td>구로디지털지사</td><td>02-6300-6300</td></tr>
<tr><td>02-399-6964</td><td>대구경북지사</td><td>053-252-4932</td><td>인천지사</td><td>032-422-2716</td></tr>
<tr><td>부산지사</td><td>051-245-3982</td><td>대전충남지사</td><td>042-526-3291</td><td>울산지사</td><td>052-261-1836</td></tr>
<tr><td>광주전남지사</td><td>062-226-4823</td><td>경기북부지사</td><td>031-932-3502</td><td>강원지사</td><td>033-765-1063</td></tr>
<tr><td>경기지사</td><td>031-259-7613</td><td>전북지사</td><td>063-276-2363</td><td>경남지사</td><td>055-286-9394</td></tr>
<tr><td>충북지사</td><td>043-236-1304</td><td>제주사무소</td><td>064-751-6601</td><td>–</td><td>–</td></tr>
</table></td></tr>
</table>

<참고>

▌환변동보험 종류▐

구 분		내 용	특 징
일반선물환 (Forward)		환율하락시 보험공사에서 환차손(보험금) 지급하고, 환율상승시 업체에서 환차익(환수금) 납부 - 보험금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환수금 : 보장환율 < 결제환율	환율하락시 보장탁월 하나, 환율상승시 업체에서 부담
옵션형	범위제한선물환 (Collar)	일정구간에서는 보험금과 환수금 납부가 면제되는 상품 - 보험금 : 보장환율 -50원>결제환율 - 환수금 : 보장환율 +50원<결제환율	○ ±50원, ±100원, ±200원 구간에서 환차익, 환손실 인정 ○ 보험요율 : 1 ~ 3%로 수시변동
	부분보장 옵션형 (Put Spread Option)	환율하락시에는 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최대 달러당 20 ~ 80원 한도 범위내)하고, 환율상승시에는 환수금 면제되는 상품	환율하락시에는 일정부분만 보장(최대 달러당 20 ~ 80원 한도 범위내)받고, 환율상승시 업체부담 없음
	완전보장 옵션형 (Put Option)	환율하락시에는 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락분 전액 지급)하고, 환율 상승시에는 환수금 면제되는 상품	환율하락시 하락분 전액 보장 받고, 환율상승시 업체부담 없음

* 지원비율은 모두 가입보험료의 95%로 동일하며, 지원한도는 일반선물환, 범위제한선물환, 부분보장형옵션을 합산하여 30백만원 한도임
* 보험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 문의 요망

▌한국무역보험공사(http://www.keic.or.kr/) 영업점 연락처▐

영업점	연락처	영업점	연락처	영업점	연락처
중앙지사 (본사)	02-399-6596	강남지사	02-551-0481	구로디지털 지사	02-6300-6300
부산지사	051-245-3981	대구경북지사	053-252-4932	인천지사	032-422-2713
광주전남지사	062-226-4820	대전충남지사	042-526-3291	울산지사	052-261-1833
경기지사	031-259-7600	경기북부지사	031-932-3501	강원지사	033-765-1060
충북지사	043-236-1301	전북지사	063-276-2361	경남지사	055-286-9396
제주사무소	064-751-6601				

<참고>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 상품개요

- 구　　성 : 기본위험과 선택위험
- 계약기간 : 1년
- 가입대상 : 농수산물 수출자 또는 생산자
- 보상금액 : 책임금액 범위 내
- 가입방법 : 기본위험(대금미회수 위험) 가입 필수, 나머지 위험은 선택

■ 상품별 설명

구 분	기본계약	선 택 계 약	
	대금미회수위험	수입국 검역위험	클레임발생 위험
책임금액	1억원 ~ 3억원	1백만원 ~ 1천만원	1천만원 ~ 5천만원
보상요건	수입자 또는 수입국의 사정으로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수입국 검역과정에서 소독, 폐기 명령	바이어의 클레임 제기
보상내용	계약기간 중 모든 수출거래	훈증 및 폐기 비용 보상	클레임 처리비용 (조사, 소송 등)
계 약 액	천만원 단위	백만원 단위	천만원 단위
보험요율 무신용장	신용장거래 0.3% 무신용장 2.0%	4%	0.7%
보상거절	물품에 하자 또는 법령 위반 수출시		본지사간 수출거래, 법령위반 및 수출대금 결제 만기일 경과후 발생한 클레임
보상시기	보험금 청구 후 1개월 이내		
보 상 액	보험계약 범위내에서 보상	소독 및 폐기 비용	품질조사비 및 중재, 소송비100%, 재수입 또는 전매시 운송비 및 현지 창고 보관비 50%

* 보험요율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일반 단기수출보험(선적후)와 농수산물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의 차이점▐

구 분		농수산물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일반 단기수출보험(선적후)
품 목		농·수·축·임산물	제한 없음
우대내용	담보위험	수입국의 행정규제조치 또는 검역기준 변경에 따른 통관불능 위험 포함	–
	보험료율	결제방법 및 기간에 따라 단기수출보험의 35% ~ 55% 수준	–

18. 해외인증 등록지원

<table>
<tr><td>개 요</td><td>○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에 기여</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td></tr>
<tr><td>대 상
인증제도</td><td>○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 단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특정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td></tr>
<tr><td>지원내용</td><td><table><tr><th>지원기준</th><th>지원범위</th><th>지원한도</th></tr><tr><td>해외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90%</td><td>관납료(심사비, 등록비 등), 제품 시험비용, 대행비 등</td><td>업체당 연간 2천만원 이내</td></tr></table></td></tr>
<tr><td>추진절차</td><td>지원신청서 제출 (1~2월) ▶ 신청서 평가 후 대상업체 선정 ▶ 인증 취득 후 관련증빙 제출 ▶ 증빙 검토 후 비용지원</td></tr>
<tr><td>추진현황
및 계획</td><td>○ 지원대상 선정업체가 인증 획득 완료 후 aT지사에 정산 요청</td></tr>
<tr><td>이용방법</td><td>○ 수출업체는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사업 신청
○ aT본사에서 신청내역 평가 후 지원대상 업체를 일괄 선정하여 aT관할지사에 통보 / aT관할지사는 해당 업체에 선정결과 안내 및 사후관리
○ 수출업체는 인증취득 후 aT 지사에 해당 인증서 사본, 관련증빙서 제출
○ aT지사는 증빙서 검토 후 정산지원 결과를 매월 단위 본사 보고</td></tr>
<tr><td>담당부서</td><td>○ aT 신시장개척부
– 담당자 : 윤진형 대리(02-6300-1548)</td></tr>
</table>

① 할랄식품(Halal Food) 인증 소개

<table>
<tr><td>개 요</td><td>○ '할랄(Halal)'이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할랄식품(Halal Food)'은 이슬람 율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농수산식품을 의미
– 철저하게 할랄이 아닌 음식과 분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매우 청결한 음식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요구
– 비할랄식품 : 돼지고기(가공품 포함), 저장·판매·처리·보존 과정상 돼지고기와 접촉한 식품, 모든 생물의 피 및 배설물, 주류성분이나 중독성분 함유제품 등</td></tr>
<tr><td>보급현황</td><td>○ 할랄의 시장규모는 '12년 1조 88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world halal forum 자료)
– 2012년 전세계 인구의 18억 명, 2020년 전세계 인구의 30% 이상 달할 것으로 전망
○ 할랄제품은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이라는 인식으로 비무슬림인 사이에서도 인기 상승
– 네덜란드의 할랄 쿠키·초콜릿 제조업체 마르하바 소비자의 25%는 비무슬림인</td></tr>
<tr><td>인 증
취득절차</td><td>○ 현재 한국이슬람교중앙회(KFM)가 할랄증명서 발급
– '13년 7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JAKIM(이슬람 개발부)가 동등성을 인정하는 할랄 인증기관이 됨
○ 인도네시아 : MUI 부속기관인 LPPOM-MUI에서 발급
–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할랄 인증은 협상 추진 중
– 품목별 100만 ~ 500만 루피아 및 약 1 ~ 2개월 소요
– 인도네시아에서 현행 할랄 인증은 권고사항이나 5년 후에는 의무사항으로 변경
○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인 MS1500:2009는 말레이시아 표준부(Department of Standard)에 의해 개발된 할랄 제품의 생산, 취급, 보관기준에 대한 ISO인증이며, GMP와 GHP와 같은 국제기준을 준수
<table>
<tr><th>인증 절차</th><th>인증 로고와 인증서</th></tr>
<tr><td>Document Approval
↓
Premise Inspection/Audit
↓
Report Writing
↓
Panel Committee
↓
Issuance of Halal Certificate
↓
Monitoring and Enforcement</td><td>
</td></tr>
</table></td></tr>
<tr><td>해 외
발급기관</td><td>
<table>
<tr><th>국 가</th><th>발급기관</th></tr>
<tr><td>인도네시아</td><td>The Assesment Institute for Foods, Drugs and Cosmetics Council of Ulama(LPPOM-MUI)</td></tr>
<tr><td>말레이시아</td><td>Ministry of Islamic Development</td></tr>
</table></td></tr>
<tr><td>소요비용</td><td>○ (국내) 품목당 약 100만원, (해외) 품목당 약 30백만원</td></tr>
</table>

② 코셔(Kosher) 인증 소개

<table>
<tr><td>개 요</td><td>○ '코셔(Kosher)'란 히브루어로 '적합한'이라는 뜻으로 현재는 '유대율법에 합당한 음식'이란 의미로 사용됨
– 코셔에 해당하는 육류와 가금류는 반드시 규정된 방식대로 도살하여야 하며, 육류와 유제품은 함께 생산 또는 섭취 불가
○ 코셔 인증이란 원재료 및 생산설비를 통해 특정 식품의 코셔 기준에 부합 여부를 가리는 제도</td></tr>
<tr><td>보급현황</td><td>○ 세계 코셔 시장 규모는 약 2,500억$
○ 미국의 코셔 시장규모는 '13년 기준 13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며 코셔 식품시장은 연평균 12.5%의 성장율을 보임
– 미국 수퍼마켓에서 판매된 식료품의 40%가 코셔 인증마크를 부착
– 무슬림 또한 코셔 식품을 먹을 수 있어 20억 무슬림 인구가 잠재시장으로 추정</td></tr>
<tr><td>인 증
취득절차</td><td>○ 인증기관 : 수백 개의 코셔 인증기관 중 OU, Star-K, KosherQuest 등이 가장 알려져 있으며 이 중 OU마크가 전체 코셔 제품의 70 ~ 80% 차지
* ADM, Cargill, Campbell, Coca Cola, Heinz, Nestle 등 세계적 식품기업 OU마크 선택
○ 인증종류 : 제품 종류에 따라 OU(우유, 육류 비포함), OU-D(유제품), OU-M (육류) 등으로 구분
○ 인증 절차 및 마크
<table><tr><th>인증 절차</th><th>인증 로고</th></tr><tr><td>신청서 제출 → 생산 시설 검사 (OU 실현 가능성 검토) → 이사회 평가 승인 → 계약서 작성 → 생산 시설 재검사 → 코셔 인증서 발급</td><td>ORTHODOX UNION · UNION ORTHODOXE</td></tr></table>○ 소요기간 : 평균 3개월 소요</td></tr>
<tr><td>소요비용</td><td>○ 품목당 연간 $5,000 ~ $7,000</td></tr>
</table>

5 현지 유통망 개척

19.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① 종합박람회 참가

<table>
<tr><td>개 요</td><td>○ 주요 해외식품박람회별로 국내 수출업체를 모집하여 국가관 형태로 참가 지원</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식품 수출업체</td></tr>
<tr><td>지원내용</td><td>
<table>
<tr><th>구 분</th><th>지원
대상</th><th>지원
비율</th><th>지원
한도</th><th>비 고</th></tr>
<tr><td>• 부스임차비</td><td>중소기업
대기업</td><td>100%
50%</td><td>1부스</td><td>한국관 표준부스(3×3m 기준)</td></tr>
<tr><td>• 장치비</td><td>전 업체
대기업</td><td>100%
50%</td><td>1부스</td><td>한국관 표준부스(3×3m 기준)</td></tr>
<tr><td>• 기본비품임차비</td><td>전 업체
대기업</td><td>100%
50%</td><td>1부스</td><td>쇼케이스, 시식대, 테이블, 의자, 전기1kw</td></tr>
<tr><td>• 운송통관비/
냉장(냉동)비품임차비</td><td>신선농산물
수출업체</td><td>100%</td><td>300만원</td><td>신선농산물에 한함</td></tr>
</table>
</td></tr>
<tr><td>추진절차</td><td>모집공고 및 접수 ▶ 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 전시품 발송 및 비품 신청(2개월 전) ▶ 박람회 참가</td></tr>
<tr><td>추진현황
및 계획</td><td>○ 현황 : 연간 57회 참가(종합박람회 31, 벤더박람회 15, 아웃소싱 11)
○ 계획 : ‘17년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4~5월), ’18년 참가계획 확정(’17.10월)</td></tr>
<tr><td>이용방법</td><td>○ 모집시기 : 연 2회, 상반기(4월, 10월)
○ 참가신청 : aT홈페이지(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내 국제박람회 모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 신청
○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 정부정책 호응도, 참가업체·품목의 현지시장 진출여건 등</td></tr>
<tr><td>담당부서</td><td>○ aT 신시장개척부 김동석 대리(02-6300-1544)</td></tr>
</table>

<참고> '17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계획(총 57회)

구 분	주최국/도시	개최일정
<총 계 >		57
<종합박람회 >		31회
1. 모스크바(PROD EXPO)	러시아 / 모스크바	2.6-10
2. 두바이(Gulfood)	UAE / 두바이	2.26-3.2
3. 애너하임(NPEW)	미국 / 애너하임	3.10-12
4. 도쿄(FoodexJapan)	일본 / 도쿄	3.7-10
5. 멕시코(Alimentaria)	멕시코 / 과달라하라	3.8-10
6. 영국 런던(IFE)	영국 / 런던	3.19-22
7. 북경 유아용품박람회(MICF)	중국 / 북경	3.25-27
8. 베트남 호치민(F&H Vietnam)	베트남 / 호치민	4.25-27
9. 브라질(APAS)	브라질 / 상파울루	5.2-5
10. 중국 수출입상품교역회	중국 / 광저우	5.1-5
11. 캐나다 식품박람회(SIAL)	캐나다 / 몬트리올	5.2-4
12. 아프리카(IFEA)	남아공 / 요하네스버그	5.7-9
13. 밀라노 국제식품박람회(TUTTO)	이태리 / 밀라노	5.8-11
14. 상하이(SIAL China)	중국 / 상해	5.18-20
15. 필리핀(IFEX)	필리핀 / 마닐라	5.19-21
16. 방콕(Thaifex)	태국 / 방콕	5.31-6.4
17. 미얀마(F&H Myanmar)	미얀마 / 양곤	6.7-9
18. 타이베이(Food Taipei)	대만 / 타이베이	6.21-24
19. 뉴욕(Fancy Food Show)	미국 / 뉴욕	6.25-27
20. 말레이지아(MIFB)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	7월
21. 싱가포르 스페셜리티&파인푸드	싱가포르	7.18-20
22. 홍콩(Food Expo)	홍콩	8.17-19
23. 인도 뭄바이(WOFI)	인도 / 뭄바이	9.14-16
24. 이스탄불(World Food)	터키 / 이스탄불	9.1-4
25. 홍콩(Asia Fruit Logistica)	홍콩	9.6-8
26. 모스크바(World food Moscow)	러시아 / 모스크바	9.12~9.15
27. 독일 쾰른(ANUGA)	독일 / 쾰른	10.7-11
28. 베이징(World of Food)	중국 / 베이징	11월
29. 카자흐스탄(World Food)	카자흐스탄/알마티	11.2-4
30. 베트남(Food Expo)	베트남 / 호치민	11.16-19
31. 인도네시아(Sial Interfood)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11.22-25

구 분	주최국/도시	개최일정
<종합박람회 - 벤더박람회>		**15회**
1. 고쿠부(홋카이도)	일본 / 홋카이도	1월
2. 카나칸 종합기획상담회	일본 / 호쿠리쿠	2월(8월)
3. 수퍼마켓트레이드쇼(SMTS)	일본 / 도쿄	2.15-17
4. 춘계 가토우그룹 상담회	일본 / 고베	3월
5. 중국성도당주교역회	중국 / 청뚜	3.26-28
6. 외식비지니스위크(간사이)	일본 / 오사카	5.23-35
7. 고쿠부 수도권 · 관동	일본 / 도쿄	6월
8. KeHE (신규)	미국 / 미네소타	6.12-13
9. 닛폰악세스 관서	일본 / 오사카	7월
10. 닛폰악세스 사이타마	일본 / 사이타마	7월
11. 이토츄(하반기)	일본 / 오사카	7월
12. 알프레사 헬스케어	일본 / 도쿄	7월
13. ECRM	미국 / 애리조나	7.26-29
14. 외식비즈니스 위크	일본 / 도쿄	8.30-9.1
15. 추계 가토우그룹 상담회	일본 / 고베	9월
<종합박람회 - 아웃소싱>		**11회**
1. 프랑스 국제농기계	프랑스 / 파리	2.26-3.2
2. VIV ASIA 2017	태국 / 방콕	3.15-17
3. 중국 식품소재박람회(FI	중국 / 상해	3.23-25
4. LIVE STOCK 2017 PHILIPPINE EXPO	필리핀 / 마닐라	5.24-26
5. 일본 식품소재박람회(IFIA)	일본 / 도쿄	5.18-20
6. 미국 시설원예박람회	미국 / 콜럼부스	7월
7. 태국 국제농기계(SIMA SEAN)	태국 / 방콕	9월
8. 중국 국제농기계	중국 / 미정	10월
9. 중국 식품음료박람회(CFDF)	중국 / 충칭	10.26-28
10. 이태리 글루텐프리엑스포	이탈리아 / 리미니	11월
11. 아부다비식품박람회(SIAL ME)	UAE / 아부다비	12.4-6

② 개별박람회 참가

<table>
<tr><td>개 요</td><td>○ aT 또는 유관기관이 주관하지 않는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식품 수출업체</td></tr>
<tr><td>지원내용</td><td>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5대 시장</th><th>동남아 시장</th><th>기타 시장</th></tr>
<tr><td>지원한도</td><td colspan="2">4,000천원 / 1회</td><td></td><td>8,000천원 / 1회</td></tr>
<tr><td>해당지역</td><td colspan="2">• 5대 시장 : 일본, 미국, 중국(홍콩), 러시아, 대만
• 동남아 시장</td><td></td><td>• 5대 시장과 동남아시장을 제외한 전 지역</td></tr>
<tr><td rowspan="2">지원항목</td><td colspan="3">• 임차비 : 18㎡ 이내 / 장치비 : Shell부스, 간판, 조명, 선반, 카펫, 전시대, 전기 등
• 비품임차비 : 카탈로그스탠드, 냉·온수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 출장자(1인) 왕복항공료(E-Class 기준, 5대 시장 제외)</td></tr>
</table>
* 대기업의 경우 지원한도의 50% 범위 내 지원
</td></tr>
<tr><td>추진절차</td><td>모집공고 및 접수 ▶ 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상반기 : 당년 1월 / 하반기 : 당년 4월) ▶ 박람회참가 (연중) ▶ 참가비지원 (30일 이내)</td></tr>
<tr><td>이용방법</td><td>○ 모집시기 : 연 2회(4월, 11월)
○ 참가신청 : aT홈페이지(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내 개별참가박람회 모집공고 → 개별참가박람회 참가 신청
○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 정부정책 호응도, 참가업체·품목의 현지시장 진출여건 등</td></tr>
<tr><td>추진현황 및 계획</td><td>○ 현황 : 연간 150회
○ 계획 : '17년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4월), '17년 참가계획 확정('17.10월)</td></tr>
<tr><td>담당부서</td><td>○ aT 신시장개척부 김동석 대리(02-6300-1544)</td></tr>
</table>

20. 바이어 거래알선

① 대규모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uy Korean Food)

<table>
<tr><td>개 요</td><td>○ 해외aT 및 재외공관 추천 우수바이어 초청을 통한 대규모 수출상담회 개최로 새로운 수출거래선 창출</td></tr>
<tr><td>지원대상</td><td>○ 해외바이어(수입업체, 벤더, 유통업체)
○ 국내수출업체</td></tr>
<tr><td>지원내용</td><td>○ 해외바이어 한국 출장 및 상담기회 제공
– 왕복 항공료(Economy), 체재비, 통역, 기타 교통편의 등
– 상담회장 내 상담부스 제공, 사전 매칭된 수출업체와 1:1 상담
○ 국내수출업체 바이어와 상담기회 제공
– 사전 매칭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 진행</td></tr>
<tr><td>지원절차</td><td>모집공고 ▶ 국내업체 바이어 매칭 신청 ▶ 상담주선 ▶ 상담회 개최
* ‘상담주선’은 바이어가 상담 원하는 수출업체를 결정하여 매칭</td></tr>
<tr><td>이용방법</td><td>○ 모집시기 : 미정
○ 참가신청 : 모집공고 확인(www.at.or.kr) → 온라인 신청(bms.at.or.kr)
→ 상담 스케줄 확인(bms.at.or.kr)</td></tr>
<tr><td>추진현황 및 계획</td><td>○ 현황(2016)
<table><tr><th>행사명</th><th>실시일</th><th>초청 바이어</th><th>참가 수출업체</th><th>상담금액 (천불)</th></tr><tr><td>Buy Korean Food 2016</td><td>8.31</td><td>163명</td><td>295명</td><td>146,000</td></tr></table>○ 계획(2017)
– Buy Korean Food 2017 개최(미정)</td></tr>
<tr><td>담당부서</td><td>○ aT 해외마케팅부 김민선 과장(02-6300-1526)</td></tr>
</table>

② 수출업체 바이어 초청 지원

개 요	○ 수출업체의 해외 유망 바이어 초청을 통해 실질적인 상담 및 계약 수주를 지원하여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 수출업체 당 1명의 바이어 초청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 – 항공료 : 이코노미 등급 왕복 기준 – 숙박비 : 50만원 이내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 ▶ 업체 선정 및 사업 실행 ▶ 결과보고 제출 ▶ 바이어 초청비용 지원
이용방법	○ 모집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참가신청 : 모집공고 확인(www.at.or.kr) → 온라인 신청(global.at.or.kr) ○ 선정심사기준 : 초청 바이어의 최근 3개년 상담회 참가 횟수, 초청바이어 국가의 우리 농식품 수입 증가율, 상담품목의 수입확대 가능성 및 현지시장 진출 용이성, 공사와 MOU 체결 여부 등
추진현황 및 계획	○ 현황(2016) : 43명 ○ 계획(2017) : 총 50명
담당부서	○ aT 해외마케팅부 빈상현 대리(02-6300-1527)

21. 해외 안테나숍(Antenna Shop) 설치지원

<table>
<tr><td>개 요</td><td>○ 한국 농식품의 신규시장 개척 및 진입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숍인숍 등 현지여건에 맞는 해외 안테나숍 운영사업비 지원</td></tr>
<tr><td>지원대상</td><td>○ 한국농식품 취급 해외 벤더 및 수입상 또는 국내 수출업체</td></tr>
<tr><td>지원내용</td><td>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사업기간</td><td>2017. 1월 ~ 11월말(3~10개월 내외)</td></tr>
<tr><td>사업내용</td><td>숍인숍 등 현지 여건에 맞는 안테나숍을 설치하여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음·시식 등 마켓테스트 실시, 소비자 반응 조사를 통해 현지 유통매장 신규 입점 추진 등</td></tr>
<tr><td>운영국가</td><td>중국(2·3선도시), 동남아, 동유럽, 중남미 등 한국식품 진출이 저조한 지역</td></tr>
<tr><td>지원내용</td><td>안테나숍 임차·장치비, 홍보비, 시식비 등 마케팅비용</td></tr>
<tr><td>지원기준</td><td>국비 80%, 자부담 20%</td></tr>
<tr><td>지원한도액</td><td>운영기간 및 지원 연차에 따라 지원 차등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1년차</th><th>2년차</th><th>3년차</th></tr>
<tr><td rowspan="3">지원 한도 (백만원)</td><td>3개월 이상 운영</td><td>150</td><td>-</td><td>-</td></tr>
<tr><td>6개월 이상 운영</td><td>200</td><td>140</td><td>85</td></tr>
<tr><td>9개월 이상 운영</td><td>300</td><td>210</td><td>125</td></tr>
</table>
</td></tr>
</table>
</td></tr>
<tr><td>지원절차</td><td>
<table>
<tr><th>세부실행계획 수립</th><th>운영주체 선정</th><th>업무위탁 및 준비</th><th>안테나숍 운영</th></tr>
<tr><td>• 세부실행계획 수립(aT)
• 농식품부 승인</td><td>• 운영주체 모집공고
• 운영주체 선정</td><td>• 운영주체 업무약정 체결(본사,해외)
• 물품전시준비 등
• 기타 현장업무</td><td>• 운영
• 정산
• 사후관리(성과)</td></tr>
</table>
</td></tr>
<tr><td>이용방법</td><td>○ 모집시기 : 연초
○ 참가신청 : 관할해외지사 or 본사(관할지사가 없는 지역)에 신청
– 본사 : 수출업체정보 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신청 입력
•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는 JPG, PDF 파일 등으로 등록
– aT 해외조직망 관할지역: 해외조직망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선정평가
– 평가기준에 따라 계량, 비계량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td></tr>
<tr><td>추진현황 및 계획</td><td>○ ’17년도 사업자 모집공고(1월초)
○ 최종사업자 선정 통보(1월중)
○ 선정된 운영주체의 현지 매장 임대차계약서 확인 및 현지실사 추진(2월)
○ 현지실사 후 약정체결(2월)
○ 운영(오픈이후~11월말)
○ 안테나숍 운영주체 초청 우수신상품 홍보설명회(3월, 8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12월)</td></tr>
<tr><td>담당부서</td><td>○ aT 신시장개척부 전명희 과장(02-6300-1547)</td></tr>
</table>

22. Global K-Food Fair 통합마케팅을 통한 시장개척 지원

<table>
<tr><td>개 요</td><td>○ 해외 현지에서 한국 수출업체 및 현지 바이어의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참가 수출업체의 수출알선(수출업체의 신규시장 개척) 및 현지 소비 주도층 대상 소비자체험행사를 통한 한국식품 수입바이어, 참여 수출업체 마켓테스트, 한식당 협회 등의 시식체험, 판매 및 홍보(수출되고 있는 한국식품의 소비 촉진) 등의 통합마케팅을 통한 주력·유망·신규시장에 한국농식품 수출확대 도모</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식품수출업체
*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알선을 통한 페어 개최국 시장진입 및 수출확대 지원</td></tr>
<tr><td>지원내용</td><td>
<table>
<tr><td>개최계획</td><td colspan="2">5개국 5회(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UAE)</td></tr>
<tr><td rowspan="2">지원내용</td><td>수출업체</td><td>- 수출상담회(수출상담액 및 현장계약 제고) : 장소 임차 및 조성, 바이어 모집 · 수출상담(통역포함) 지원
- 소비자체험행사(소비자 반응조사 및 제품개선을 위한 테스트 등) : 참가품목 마켓테스트 등을 위한 장소 임차 및 조성 부스, 통역요원 지원
- 운송비 : 업체당 100만원~ 200만원(권역별 차등)한도 내 지원</td></tr>
<tr><td>바이어</td><td>- 수출상담회(수출상담액 및 현장계약 제고) : 항공 및 숙박비용 지원
- 소비자체험행사 : 한국식품 판촉 등 성과 위주 행사 중심
· 한국식품 판매 및 홍보 부스 지원</td></tr>
</table>
</td></tr>
<tr><td>지원절차</td><td>수출업체 모집공고 ▶ 국내업체 신청 ▶ 바이어 매칭 ▶ 수출 상담회 개최
*‘수출상담회’는 수출업체와 바이어 상담 매칭하여 탄력적 운용</td></tr>
<tr><td>이용방법</td><td>○ 모집시기 : 1~2월중에 모집 공고
○ 참가신청 : 공사홈페이지(http://www.at.or.kr)를 통한 지원신청(추후 공고)
○ 선정기준 : 페어 개최국별 수출유망품목을 기준으로 수출확대 가능성 고려</td></tr>
<tr><td>추진현황 및 계획</td><td>○ 현황 : 2017년 5개국 5회 개최
– 해외 수출국 현지에서 직접적인 수출상담회 개최로 수출확대 추진
○ 계획
– 개최국별 50여개 수출업체가 참여하여 개최국가 및 인근국가 바이어 초청 상담 개최
* 세부추진계획 확정 후 사업진행 예정</td></tr>
<tr><td>담당부서</td><td>○ aT 해외마케팅부 이성복 차장(02-6300-1522)</td></tr>
</table>

23. 해외판촉행사 지원

<table>
<tr><td>개 요</td><td>○ 해외 대형유통매장 연계 판촉행사(시식, 홍보, 프로모션 등) 통해 한국 농수산식품 입점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td></tr>
<tr><td>지원대상</td><td>○ 국내 수출업체 및 수출관련 협회, 해외유통업체 및 바이어
* 단, 국내 수출업체는 현지 입점판매 등 거래관계가 있고 행사추진이 가능한 업체</td></tr>
<tr><td>지원내용</td><td>○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식품 판매 확대를 위한 판촉마케팅 활동비
– 지원항목 :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매체광고, 전단지, 포스터 등), 시식행사비
* 지원한도 내 행사관련 발생비용의 80% 지원(단, 대기업은 발생비용의 50% 지원)
* 수출선도조직, 단체 및 협회는 자부담 15%, 1억원 한도 내 지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지원대상</th><th colspan="2">지원한도(백만원)</th><th>지원비율</th></tr>
<tr><th>부류</th><th>종합</th><th>(%)</th></tr>
<tr><td rowspan="2">국내공모</td><td>수출업체</td><td colspan="2">30</td><td>80</td></tr>
<tr><td>수출선도조직, 단체 및 협회</td><td colspan="2">100</td><td>85</td></tr>
<tr><td>해외aT</td><td>해외유통업체 및 바이어</td><td>30</td><td>50</td><td>80</td></tr>
</table>
– 사업의무액 : 지원액 2배 이상의 수출(입)액 (미달성시 달성비율에 따라 지원한도 축소)</td></tr>
<tr><td>선정기준</td><td>○ 계량평가(50점) : 수출목표액, ‘15년 대비 ’16년도 수출증가율, 관련서류(해외인증, 라벨링, 카탈로그 보유여부) 등
○ 비계량평가(50점) : 행사계획 및 품목·국가별 수출확대 가능성, 수입업체(바이어) 규모 등 종합평가
* 전년도 aT 판촉사업 선정 후 중도포기업체는 감점 적용</td></tr>
<tr><td>진행절차</td><td>익년도 상반기 사업자 모집 (10월) ▶ 익년도 상반기 사업자 선정 (11월) ▶ 사업이행 확약서 제출 (행사시작 전) 및 사업 추진(점검, 결과보고, 정산) ▶ 당해년도 하반기 사업자 모집 (4월) ▶ 당해연도 하반기 사업자 선정(5월) ▶ 사업이행 확약서 제출 (행사시작 전) 및 사업 추진(점검, 결과보고, 정산)</td></tr>
<tr><td>모집시기</td><td>○ ‘17년도 하반기 국내공모 판촉 사업자 공고 및 선정 예정(4~5월 중)</td></tr>
<tr><td>신청방법</td><td>○ 모집시기 : 매년 4월, 10월
○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td></tr>
<tr><td>문의처</td><td>○ aT 식품수출부 정현철 차장(061-931-0841)
김서현 대리(061-931-0844)</td></tr>
</table>

<참고 : 연락처>

○ aT 국내 지역본부

지역본부명	주 소	연 락 처
서울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종로 229 수목마이움 B/D 7층	TEL 031-8060-6051,6054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608호 (정석빌딩 신관)	TEL 032-888-6162~3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16층	TEL 033-920-1547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TEL 043-902-9523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TEL 042-488-8542~3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서광빌딩 6층 601호	TEL 063-904-5876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8	TEL 062-940-7006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18층	TEL 053-741-5221~3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문현동, 한일오피스텔 20층)	TEL 051-644-1401~4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8호	TEL 055-274-8300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노형동 현대해상빌딩 10층)	TEL 064-746-9472

○ aT 해외지사

구 분		주 소	연 락 처
중국지역본부	베이징 지사	603 Room, Block A, Fairmont Tower No.33 Guangshun North Street,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102, China (100102 中國 北京市 朝阳區 广顺北大街 33号院 1号楼 1单元 6层 603室)	E-Mail beijingat@at.or.kr TEL 86-10-6410-6120
	상하이 지사	Room 3201, New Hongqiao Central Plaza No.83, LouShanGuan Rd., Changning District, Shanghai, 200336, China (200336 中國 上海市 長寧區 婁山關路 83號 新虹橋中心大厦 3201室)	E-Mail shanghaiat@at.or.kr TEL 86-21-3256-6325~7
	청뚜 지사	2003 Room, Chengdu Ping An fortune Center No.1, Section 3, Renmin South Road, Wuhou District, Chengdu, Sichuan Province, 610041 P.R.C. China (中国四川省成都市武侯区人民南路三段一号成都平安财富中心 610041)	E-Mail chengdu@at.or.kr TEL 86-28-8283-3376/86
	홍콩 지사	Room 705, 7F Jubilee Centre, 18 Fenwick Street, 46 Gloucester Rd, Wanchai, Hong Kong	E-Mail hkatcenter@at.or.kr TEL 852-2588-1614/16
	칭다오 aT물류 유한공사	Qingdao aT logistics Co., Ltd West Shuangyuan Rd., Liuting Street, Chengyang, Qingdao, China (青岛市 城阳区 流亭街道 双元路 西 青岛爱特物流有限公司)	E-Mail qingdao_logistics@at.or.kr TEL 86-532-6696-2229
도쿄지사		Korea Agro-Trade Center, Tokyo Korea Center 5F, 4-4-10 Yotsuya, Shinjuku-ku, Tokyo, 160-0004, Japan (東京都新宿区四谷4-4-10 KOREA CENTER 5F)	E-Mail tokyo@at.or.kr TEL 81-3-5367-6656, 6693~94
오사카지사		8F, Nomura Fudousan Osaka Bldg. 1-8-15, Azuchimachi, Chuou-Ku, Osaka, 541-0052, Japan (大阪市 中央區 安土町 1-8-15, 野村不動産大阪B/D 8F)	E-Mail osaka@at.or.kr TEL 81-6-6260-7661

구 분	주 소	연 락 처
자카르타지사	The Energy Building 20th FL, Zone F, SCBD Lot.11A JL.Jenderal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E-Mail jakarta@at.or.kr TEL 62-21-2995-9032~3
하노이지사	#1213, 12th floor., Keangnam Hanoi Landmark 72 Tower, Plot E6, Pham Hung Str., South Tu Liem Dist., Ha Noi., Viet Nam	E-Mail hanoi@at.or.kr TEL 84-4-6282-2987
방콕사무소	#2102 Level 21, Interchange 21, 339 Sukhumvit Road, North Klongtoey,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E-Mail bangkok@at.or.kr TEL 66-2611-2627~9(내선 12)
로스앤젤레스 지사	12750 Center Court Drive South, #255, Cerritos, CA 90703, USA	E-Mail losangeles@at.or.kr TEL 1-562-809-8810
뉴욕지사	111 Great Neck Rd, Suite 208, Great Neck, NY 11021, USA	E-Mail newyork@at.or.kr TEL 1-516-829-1633
파리지사	Korea Agro-Trade Center, 89 Rue du Gouverneur Général Eboué (1er etage), 92130, Issy-les-moulineaux, France	E-Mail paris@at.or.kr TEL 33-1-4108-6076
아부다비지사	P.O.Box 41337 #401-C, Montazah Tower, Al Khalidiyah Street, Abu Dhabi, UAE	E-Mail abudhabi@at.or.kr